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21

발의연월일: 2022. 10. 17.

발 의 자:이인영·최종윤·인재근

김의겸 • 이수진 • 박성준

박용진 • 조오섭 • 김한규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인 관계와 복잡한절차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정 신청을 하는 중소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중소기업이 떠안고있음.

이는 노무비 상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되더라도 중소기업이 그 변동분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급원가의 변동 시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다시 발급하여 조정

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표준약정서를 마련하도록 하며,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지급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상생협력 우수기업등의 선정 대상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의 조정 지급 등을 성실히 이행한 자를 포함함(안 제16조제1 항).
- 나.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의 인상 및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노무비의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변동하였을 경우 위탁기업은 그 변동분을 반영하여 약정서를 다시 발급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2조제7항).
- 다.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 금 표준약정서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7820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것임.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상생협력"으로, "(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을 "(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2조제7항 및 제22조의2에 따른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의 조정 지급 등을 성실히 이행한 위탁기업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1조제1항 중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탁의 내용
- 2. 납품대금의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 3.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의 품목 및 가격
- 4. 물품등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비

- 5. 물품등의 검사 방법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위탁기업은 계약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분을 반영한 납품대금의 금액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1.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
- 2.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무비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조정·지급된 경우
-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주요 원자재의 종류, 원자재의 가격기준 등 약정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탁기업은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약정서 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정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약정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 ·지원) ① -----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 자에 대하여 상생협력----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 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 라 하다)로----할 수 있다. <신 설> 1. 제22조제7항 및 제22조의2에 따른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 른 납품대금의 조정 지급 등 을 성실히 이행한 위탁기업 <신 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 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 다음 각 호의-----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 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

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 1. 위탁의 내용
- 2. 납품대금의 금액, 지급 방법및 지급기일
- 3.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의 품목 및 가격
- 4. 물품등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비
- 5. 물품등의 검사 방법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위탁기업은 계약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물품등의 공급 원가가 변동하였을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분을 반영한 납품대금의 금액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 업에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1.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된 주
 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
 한 경우
- 2.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 의 적용을 받는 노무비가 최 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조정ㆍ지급된 경우

-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 른 주요 원자재의 종류, 원자재 의 가격 기준 등 약정서의 작 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 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 1항 및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위탁기 업과 수탁기업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 ⑥ (현행과 같음)
 - ⑦ 위탁기업은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 동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 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